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한 철 우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3년 4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본청 일부기능의 이관 등 조정사항과 본청 실·국 및 사무의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< 기구조정 >

- 문화관광환경국 → 문화체육관광국(안 제5조, 제11조)
- 바이오산업국 → 바이오환경국(안 제5조, 제13조)

< 분장사무 조정 등 >

- 경제부지사 분장사무 조정(안 제4조)
- 경제, 건설, 바이오산업 관련 사무에 환경 관련 사무 추가
-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련 사무 이관(안 제11조)
 - 행정국 → 문화체육관광국

- 건축, 공공디자인, 도시경관 관련 사무(안 제11조)
 - 균형건설국 → 문화체육관광국
- 공항시설 및 항공산업 관련 사무 신설(안 제12조)
 - 균형건설국
- 환경정책 및 수질관리 관련 사무 이관(안 제13조)
 - 문화관광환경국 → 바이오환경국
-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이관 사무 조정(안 제9조, 제13조)
 -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추진관련 사항 삭제
 - 경제자유구역 내 첩복단지 및 오송2단지 관련사무 이관 및 조정

< 그 밖의 개정사항 >

- 타 조례 개정
 - 국 명칭변경 및 소관업무 조정에 따른 타 조례 일괄 개정

4. 검토의견

금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본청 일부기능의 이관 등 조정사항과 본청 살·국 및 사무의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,

주요 내용으로,

기존 문화관광환경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, 바이오산업국을 바이오환경국으로 조정하고,

- 체육관련 업무를 행정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,
- 건축·공공디자인 등 관련 사무를 균형건설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,

- 환경 및 수질관련 업무를 문화환경관광국에서 바이오환경국으로,
-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와 관련 이관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다만, 관광분야의 발전과 연계성이 높은 공항시설 및 항공산업 관련 사무의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균형건설국 이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(안 제12조)

붙임 : 1.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